

『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8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9월 2일

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
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석 태 룡

나.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, 조항을
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 정비하고,
- 금년 7. 1 전부개정 공포한 구미시 건축 조례 부칙의 “대지안의
공지에 관한 경과조치”를 적용함에 있어 조례 공포 당시 “정비
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” 불리한 개정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
개정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,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
 - 띄어쓰기, 문장표현 또는 내용 보완·수정
 - 용어의 의미 명확화, 법령 용어의 순화
- 구미시 건축조례 제838호 부칙 제2조 “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” 삭제
 - 구미시 건축 조례(공포 및 시행 : 2010. 7. 1)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“대지안의 공지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있음
 - 본 조례 시행 당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불리한 현행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본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

라. 참고사항
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
- 구미시 건축조례 부칙 제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-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띄어쓰기, 문장표현 또는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,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이며

- 구미시 건축 조례(공포 및 시행 : 2010. 7. 1)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“대지안의 공지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있으나
- 본 조례 시행 당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불리한 현행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본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